

NEWSLETTER 916

Jan 9, 2024

관세청,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검사 시 검사수수료 폐지 -

『관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기존에는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또는 신고인)이 소요시간 당 2,000원의 기본 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 해당 물품검사 수수료가 폐지되어 상세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음.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며,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를 2024년 1월 1일부터 폐지함.

II. 주요 개정내용

1. 관세법 제247조(검사 장소) 제3항 삭제

현 행	개 정
제247조(검사 장소)	제247조(검사 장소)
<p>③ 제1항에 따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p> <p>1. 검사 장소가 보세창고인 경우로서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 2.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p>	<p>〈 삭 제 〉</p>

III. 적용 대상

2024년 1월 1일 검사하는 건부터 적용

I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청, '24년 1월 1일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I Contact



양다운 관세사

T 02.6011.3051

E dyyang@esein.co.kr



이지은 관세사

T 02.6011.3092

E jelee1@esein.co.kr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